

기업공시 유의사항 ⑧⑧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공시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 (02-2087-7174,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수시공시 서식단일화 안내

I. 들어가며

-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15.11.20.개정, '15.12.3.시행)*하여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단일화하였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일반] 참조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info_list.jsp)

- 기존에는 합병 등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에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 이번 서식단일화로 인해 금감원(DART)에 한 번만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를 모두 이행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시업무 수행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수시공시 서식단일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이를 통해 상장기업 공시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공시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II. 기존의 제도 및 공시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는 총 14개이며, 이 중 거래소 수시공시와 동일한 제출사유는 13개입니다.

• 특히 부도발생·은행거래 정지 등 11개 사유는 거래소 수시공시와 공시서식까지 동일하여, 상장법인은 금감원(DART)에 한 번만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 수시공시까지 완료*되나,

* 금감원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 KIND에도 자동으로 공시

- ①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②합병 등 2개 사유는 제출사유가 동일함에도 여전히 서식이 상이하여, 상장법인인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에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 간 공시서식 〉

공시서식	제출방법	주요사유
동일 (11개)	DART에 제출시 KIND에 자동전송	- 부도발생 - 회생절차 개시신청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등 - 은행거래 정지·금지 - 해산사유 발생
별도 (2개)	DART와 KIND에 각각 제출	-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 합병 등(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

III. 주요 변경내용 및 공시방법

1. 주요 변경내용

- 서식이 상이했던 ①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②합병 등 2개 사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단일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거래소 수시공시와 제출사유가 동일한 주요사항보고서는 모두 금감원(DART)에 한 번만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공시가 완료됩니다.

※ (주의)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날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장법인인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에 따르므로 익일까지 공시)

- 공통서식의 본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해 기존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처럼 도표형입니다. 다만,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존 거래소 수시공시보다 상세해졌습니다.

- 공통서식의 첨부서류는 기존 주요사항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①의사회의사록, ②계약서(계획서), ③외부평가의견서, ④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다만, 공통서식 본문에서 대표이사의 확인이 삭제됨에 따라 공통서식의 첨부서류로 ⑤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영업양수도(법 §161 ① 7호, 영 §171 ② 1호 내지 4호) 및 합병 등(법 §161 ① 6호)에 대한 공시방법

- 중요한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교환·이전은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의 공시기준이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공통서식은 각 사유별로 1개 서식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영업양수도, 합병 등에 대한 공시서식〉

제출사유	구분	변경 전 서식	변경 후 서식
중요한 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영업양수도 결정)	- 영업양수 결정 - 영업양도 결정
	수시공시	- 영업양수 결정 - 영업양도 결정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	- 회사합병 결정
	수시공시	- 회사합병 결정	
분할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 분할(분할합병) 결정)	- 회사분할 결정
	수시공시	- 회사분할 결정	
분할합병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 분할(분할합병) 결정)	- 회사분할합병 결정
	수시공시	- 회사분할합병 결정	
주식교환 이전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결정)	- 주식교환·이전 결정
	수시공시	- 주식교환·이전 결정	

3. 중요한 자산양수도(법 §161 ① 7호, 영 §171 ② 5호)에 대한 공시방법

-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의 공시기준이 일부 상이합니다.

• 따라서 공시기준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통서식으로 작성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의 공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양수도 관련 공시기준〉

주요사항보고서	수시공시	
①자산총액 ②10%이상 ③모든 자산* ④양수도	①자산총액 ②5%이상(大2.5%), 10%이상 ③유형자산 ④취득·처분**	①자기자본 ②5%이상(大2.5%), 10%이상(大5%) ③타법인 주식·주권관련 사채권 ④취득·처분**
※ 공시기준이 일치하는 부분 (공통서식 작성대상) ①자산총액 ②10%이상 ③유형자산·타법인 주식·주권관련 사채권 ④양수도		

* 무형자산 양수도는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에만 해당 (수시공시 대상 X)

** 원시취득은 수시공시 대상에만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대상 X)

■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은 총 7개로 구성됩니다.

• 공통서식(6개)은 기존 공통서식과 마찬가지로 금감원(DART)에 당일 제출함으로써 거래소 수시공시 까지 모두 이행됩니다.

• 공통서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요사항보고서(1개)는 금감원(DART)에 익일까지, 공통서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수시공시는 거래소(KIND)에 당일 공시하시면 됩니다.

• 자산양수도에 대한 공시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영업양수도, 합병 등에 대한 공시서식 〉

제출사유	구분	변경 전 서식	변경 후 서식
자산 양수도	주요사항 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수시공시	- 유형자산 취득 - 유형자산 처분 - 타법인주식 등 취득 - 타법인주식 등 처분 - 주권관련사채권 취득 - 주권관련사채권 처분	〈공통서식〉 - 유형자산 양수 - 유형자산 양도 - 타법인주식 등 양수 - 타법인주식 등 양도 - 주권관련사채권 양수 - 주권관련사채권 양도 〈수시공시〉** - 유형자산 취득 - 유형자산 처분 - 타법인주식 등 취득 - 타법인주식 등 처분 - 주권관련사채권 취득 - 주권관련사채권 처분

*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예) 무형자산양수도 등)

**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시공시 대상 (예) 10%미만 자산양수도, 원시취득 등)

IV. 관련규정

■ 주요사항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제38호, 제38-36호 내지 제38-47호

■ 거래소 수시공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